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40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 6.

3. 회 부 일 : 2025. 1. 7.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147조부터 제151조까지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 및 증권의 발행, 양도 등을 규정하면서 제152조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8조의2에서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제37조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규정으로, 우선출자는 현행법 제68조 및 제164조에 따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우선출자를 매입 소각하는 경우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을 가져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우선출자의 매입 소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의 적합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Ⅲ. 검토의견

1.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개정).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모집·매입소각 등에----- -----.

나. 검토의견

- 수협법 제164조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출자금(우선출자금,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각종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됨.

우선출자는 이러한 자기자본의 확충을 위해 협동조합이 구성원(회원조합)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경영참여가 아닌 우선 배당을 목적으로 한 출자(우선출자)’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수협중앙회는 과거 IMF 구제금융시기 수협중앙회의 신용부문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강화를 위하여 2000.1.28. 수협법 개정을 통해 우선출자를 도입한 바 있음.

- 우선출자자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대신 배당에 있어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음. 수협중앙회는 2001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우선출자방식으로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음.

□ 우선출자는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 공고 → 우선출자의 청약 →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기발행된 우선출자증권은 이후 양도나 매입소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소멸될 수 있음.

해당 절차는 수협법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에서는 우선출자의 실시 근거(제147조)와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제148조), 우선출자자의 책임(제149조), 우선출자의 양도(제150조), 우선출자자총회 및 위임에 관한 내용(제151조, 제152조)을, 시행령에서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모집, 매입소각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우선출자증권의 발행·모집에 대해서는 수협법 제152조에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¹⁾, 매입소각에

1)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해서는 그러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개정안은 매입소각에 대해서도 법률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우선출자의 절차 및 법령 근거]

절 차	법령 근거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시행령 제31조 - 대표이사는 우선출자 납입일 2주 전까지 우선출자 증권의 내용, 좌수, 발행가액, 납입일, 모집방법을 공고해야 함
우선출자 청약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항 - 우선출자를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를 작성하 고 기명날인함.
우선출자 금액 납입	시행령 제33조제2항·제3항 - 우선출자를 하려는 자는 납입기일에 발행가액 전액 을 납입하며, 납입일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됨.
우선출자증권 발행	법률 제148조 - 중앙회는 우선출자자가 되려는 자가 납입기일에 발 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경우,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함.
배당 및 책임	법률 제147조제5항, 제149조 -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이 발생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 총회가 정하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음.
양도	법률 제150조 - 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음.
매입소각	시행령 제37조 - 중앙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해 소각할 수 있음.

□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은 수협중앙회가 대금을 지급하여 우산출자자로부터 우산출자증권을 회수한 후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수협중앙회는 2022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한 사례가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매입소각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령체계의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매입소각이 중앙회의 자본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채권자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우선출자는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할 경우 자기자본 규모에 변화를 가져와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자기자본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관련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임.

참고로 법제처는 과거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은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을 가져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수협법에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것은 법령 체계의 적합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법령정비 권고를 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422